

부산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19가합787(본소), 2019가합5048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청구의 예비적 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A(개명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담

담당변호사 이윤근

피고1. C

피고(반소원고)2.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정

피고3. E

4. F

변론 종결 2021. 4. 28.

판결 선고 2021. 6. 23.

주 문

1. 피고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1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1.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3분의 1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본소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C,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D'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11. 1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E,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11. 1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피고 D의 반소 청구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 D에게,

가.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45. 5. 5. H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I, 피고 C, D를 두었으나, H은 1952. 6. 27. 사망하였다.

나. I는 1971. 1. 7. J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E, F을 두었으나 J은 2010. 2. 4. 사망하였고, I도 2018. 12. 5. 사망하였다.

다. G은 1970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2018. 11. 20.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의 요지

원고는 1999. 11. 1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자 유언집행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주위적) 각자가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개별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이 1999. 11. 15.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0년 제 1111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한 법률관계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증인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공증인법 제38조 제3항은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언자인 망인과 증인 2명(L, M), 공증담당변호사의 인영이 모두 동일하여 누구의 인장에 의한 것인지를 도저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날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L, M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연로한 노인으로서 유언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증인법에서 정한 증인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나) 날인에 대하여

(1)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중 망인, L, M의 자필서명 옆에 표시된 인영, 공증담당변호사의 첫 번째 자필서명 옆에 표시된 인영이 모두 동일한 모양인 사실은 인정된다.

DOCUMENT: 공정증서 중 망인, L, M,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 및 날인 부분(이미지 생략)

(2) 그러나 민법과 구 공증인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제반 규정, 위에서 든 증거, 감정인 P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 L, M(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의 인영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첫 번째 인영이 동일한 모양이라는 것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민법은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제1060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제1068조) 유언자 등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이와 달리 구 공증인법은 '공증인과 열석자는 각자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8조 제3항, 현행 공증법도 같은 취지이다), 일견 위에서 본 민법 규정과 충돌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 구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유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양 법률의 입법목적과 연혁, 적용범위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공증인법이 민법의 특별법 또는 신법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민법 제106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민법 제1068조와 구 공증인법 제38조 제3항은 그 취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1072조 제2항) 유언자 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는 부분(제1068조)에 대해서는 공증인법이 준용된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구 공증인법은 일부 열석자의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공증인과 다른 열석자가 대신 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제38조 제4항), 이는 유언자 등의 자필서명만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완화된 방식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아가 민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앞서 유언취지 구수, 필기낭독, 승인에 이르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공증에 비해 엄격한 절차와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제1068조), 통상 '자필서명'과 '기명날인'은 명의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대등한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민법에서 정한 유언방식을 더욱 가중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① 유언자 등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당연히 긍정할 것이고, ②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전혀 없거나 기명만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볼 것이나, ③ 자필서명만 있거나 기명날인만 있는 때에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준수하였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그 효력을 존중하되, 그러한 미비점이 유언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망인 등의 자필서명이 뚜렷하게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필적이 각기 다른 사람의 것으로 감정되는 등 위조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모양이 다소 이례적일지언정 날인 자체는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공증담당변호사는 망인 등의 인적사항, 의사능력 유무, 유언의사의 진위 등을 확인한 후 2차례에 걸쳐 자필서명 및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 등의 인영이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로 돌릴 경우에는 망인의 유언의사가 부당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바) 더욱이 망인 등의 인영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 등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날인행위를 위임하였거나, 또는 '인(印)'자만 기재된 간이한 형태의 인영을 자신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으므로, 망인 등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 증인 결격사유에 대하여

(1) 민법 107조 제1항 제2, 3호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증의 참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는 Q생, M는 R생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약 70세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증인들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위 증인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유증의무의 이행방법 가) 유언의 집행은 유언집행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02조),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참조).

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L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으나, L는 2018. 2. 21. 사망한 사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유언집행자 선임을 신청하였으나(부산가정법원 2019느단948), 2019. 4. 30.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법원이 새로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상관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관한 유증의무를 부담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유언집행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1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D의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의 요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볼 경우 이는 원고가 얻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그밖에도 원고는 2003. 8. 6.부터 2021. 4.경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 합계 529,711,000원을 수령하여 그중 454,038,000원(= 위 529,711,000원 $\times$ 6/7)1) 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피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그 가액인 156,666,375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1,253,331,000원 $\times$ 위 피고의 유류분 1/8)을 지급하고, 위 임대료 수익 중 위 피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56,754,750원(= 위 454,038,000원 $\times$ 위 피고의 유류분 1/8)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피고 D가 망인의 직계비속임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는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따른 유류분권을 가진다.

다. 유류분반환의 범위

1)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times$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나) 한편,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증여재산의 존재 여부: 0원

(1)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S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생전에 임대료 수익 일부를 특별수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의 병간호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리업무를 도맡아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자기 계좌로 차임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망인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43,849,650원, 진료비 합계 42,891,303원을 납부하는 등 망인을 위한 용도로 위 차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2003. 8. 6.부터 2021. 4.경까지 S 등으로부터 수령한 차임은 합계 529,711,000원이나, 여기에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의 것도 포함되어 있고, 통상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각종 공과금, 비용 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위 돈 전부가 임대료 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에 대한 200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은 합계 138,932,451원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얻은 실질적인 임대료 수익은 위 529,711,000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일부나마 증여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망인이 생존한 기간 동안 S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소요된 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임대료 수익을 산정하고, 다시 여기에서 ① 망인의 요양보험료 및 진료비, ② 망인의 생활비, ③ 망인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별도로 지출한 경조사비, 제사비 등을 전부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과세표준액의 규모와 원고의 지출내역, 전체 동거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돈이 남아있을지에 의문이 있다.

(라) 설령 원고가 임대료 수익 일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병간호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 망인이 원고에게 부양의 대가로 위 돈을 지급하였거나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 생계비로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상속채무: 0원

상속채무의 존부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3) 유류분비율(B)과 유류분액($A \times B$)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법정상속분은 4분의

1이고, 위 피고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민법 제1112조 제1호), 위 피고의 유류분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분의 1 지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이다.

4) 피고 D의 특별수익(C): 0원 원고는 피고 D가 1983. 12. 15. 부산 수영구 T, U(도로명주소: 부산 수영구 V) W아파트 X호를 매수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이 9,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7,500,000원 정도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망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보더라도 원고의 추측에 지나지 않고, 망인이 피고 D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 D의 순상속분액(D): 0원 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는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

6) 유류분 부족액($A \times B - C - D$) 결국 피고 D의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 순상속분액 등 공제할 부분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곧 위에서 본 유류분액(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분의 1 지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이 된다.

라. 반환방법 및 소결론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와 피고 D의 주장에 비추어 위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을,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물반환을 명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는 유류분권리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9. 11. 11.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정민

판사강윤진

판사전유상

별지

- 1) G, 원고, 원고의 배우자, 원고의 자녀(4명) 총 7명 중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에 해당하는 6명의 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2) 피고 D는 2021. 4. 27. 준비서면을 통해 임대료 수익 중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금액을 위와 같이 정리하고도 반소 청구취지를 별도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 3)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는 '2018. 11. 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일인 2018. 11. 2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상속개시일부터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 피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비로소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 '유류분반환'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을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2019. 11. 11.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선택한다.